

의안번호	2212445
의 퇴 인	이용우 의원
회 답 일	2025.11.21.
추 계 번호	25B459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6조(산업재해 원인조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제1항) 1. 중대재해 2.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 3. 그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산업재해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6조(산업재해 원인조사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상세 사유

- 현행법 제56조¹⁾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대재해²⁾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고용노동부 훈령 제521호)³⁾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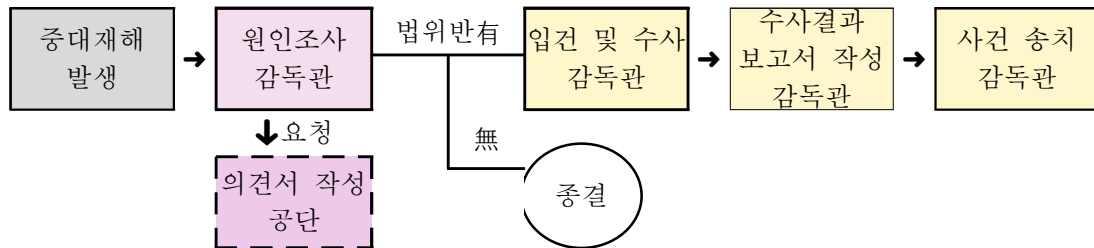
1)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⁴⁾

[그림 1] 중대재해 원인조사 프로세스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대상을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와 “그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산업재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원인조사가 증가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원인조사 참여가 확대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의 발생건수와 이에 대한 원인조사를 외부 관계전문가에게 요청할 횟수, 원인조사와 관련한 지원단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중처법, 산재보험법 및 진폐법(이하 "법령"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및 상담

5. 그 밖에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 4) 제11조(감독반의 편성) ③ 본부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관련학과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등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재해조사방법)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원인조사 의견을 받아 재해조사 내용, 조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